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2 선고 2017가단106204 판결 [구상금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 주식회사

특별대리인 D

2. 망 E의 소송수계인 F

3. 망 E의 소송수계인 G

변론 종결2020. 1. 22.

판결 선고2020. 2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

가. 피고 C 주식회사는 488,948,786원 및 그 중 74,765,004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 F, G은 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.항 기재 돈 중 각 244,474,393원 및 그 중 각 37,382,502원에 대하여,

각 2015. 10. 1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다만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. 6. 1.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%에서 연 12%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)

판사한경환

별지